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상품요약서

판매일자: 2025.06.25.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특별계 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 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며, 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최저사망적립액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 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 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 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합니다. 자세한 보증방법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Q: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실적배당 종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연금기준 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 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연금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A: 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금기

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금액

판매일자: 2025.06.25.

=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 -----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다만,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에 연금기준금액 및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Q: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요?

- A: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 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 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②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적용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가)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7/100(연단리 7%기준)
 - (나)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6/100(연단리 6%기준)
 - (다)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32%
 - ③ '①'에서 '②'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 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약관 제37조(중도인출) 제7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0: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선지급행복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A: ① 선지급행복자금이라 함은 유효한 계약에 한해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 이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선지급행복자금의 신청비율은 최소 10%에서 30%까지 10%p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선지급행복자금기간 확정연금 지급기간으로 일시금, 5년, 1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④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Q: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은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 A: ①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② 추가보험료 납입한도
 -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해당 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 경과월수(선납포함)-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일자: 2025.06.25.

(다)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O: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A: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② 1회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중도인출할 당시 기본보험료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과의 합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중도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금액은 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③ '①' 및 '②'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후 기본보험료 해약 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이 1구좌당 300만원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은 전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④ '①'에서 '③'에 따라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액은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 차감하며,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처리합니다.
 - ⑤ 중도인출 이후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대한 투자수익」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종류

- -. 연금보험, 개인형
-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2.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3.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내 용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최소거치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
7727776	12년납, 15년납, 20년납 :10년
가입나이	만 15세 ~ 60세
	55세 ~ 80세
연금개시나이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보험료 납입주기 월 납	

판매일자: 2025.06.25.

4. 가입한도

구 분	가 입 한 도	가입단위	비고
	300만원 ~ 180억원		
주 계 약	(월납보험료 5만원 ~	1만	-
	15,000만원)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주계약 보험료의 10배	1만	_
(3대질병형)	구계탁 포함표의 10메 	1건 	_

㈜ 1.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초과시 특약 가입불가

- 2. 주계약 납입기간 5년, 7년, 10년납만 특약 가입가능
- 3. 납입기간 5년납 최소보험료 10만 이상 가입가능

5.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본보험료: 1구좌 기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주계약)

+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선택특약)

- 제도성 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급부별 보험금제한 사유

가.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기준: 1구좌)

판매일자: 2025.06.25.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ス	급	금	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급부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다만 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 제외)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3.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 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4. 「계약자적립액」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동됩니다.

5.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판매일자: 2025.06.25.

- (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 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나)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적용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7/100(연단리 7%기준)
- (2)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6/100(연단리 6%기준) 다만,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1)에 따라 7/100로 적용합니다
- (3)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 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32%)
- (다) (가)에서 (나)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 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약관 제37조(중도인출) 제7항에 따라 재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에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후 납입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6.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도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중도인출금액

=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 × --

중도인출 전 계약자적립액

- (주) 「중도인출 직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중도인출 전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기 방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 7.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계산은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8. 기본 지급률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경우
55~59세	4.00%	3.80%
60~64세	4.65%	4.45%
65~69세	5.10%	4.85%
70~80세	5.50%	5.30%

9.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5%
25~29년	10%
30~39년	15%
 40년 이상	25%

10. 투자실적 가산율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연금기준금액 대비 계약자적립액의 비율 (계약자적립액 / 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미만	0%
60% 이상 90% 미만	15%
90% 이상	30%

- 11.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 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기본 지급률 x (1 + 장기유지 가산율 + 투자실적 가산율)
- 12.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 13.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지급주기는 실적배당 종신연금과 동일하게 합니다.
- 14.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일시금 또는 확정 연금으로 지급하여드립니다.
- 15.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적배당 종신연금은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 만큼 줄어 듭니다.
- 16.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가특약

(1) 무배당 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 용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주계약, 대상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 * 대상이 되는 특약: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 가. 갱신형 특약
 - 나.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다.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판매일자: 2025.06.25.

- 라. 보험료납입면제 관련 특약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8조(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이외의 사유에 따라 주계약 및 대상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전부 면제된 경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및 대상이 되는 특약 전부가 소멸한 경우. 이때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즉시형/거치형)

(가) 즉시형

7	1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10년 보증지급형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7 사한 연금액지급	
	20년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2.11	100세 보증지급형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종신 연금형	금액 보증지급형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음 일시금으로 지급 액이 연금지급개시/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 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 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 액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전환한 보험료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전환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판매일자: 2025.06.25.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 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이 특약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 시이율(연금IV)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거치형

보 장 기 간	-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10년 보증지급형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20년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계산한 연금액지급 (10년/20년/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연금 개시후	연금 보증지	100세 보증지급형	- 곧에 글있글 때	- 체증형(5%10년체증, 10%10년체증)
기시주 보험 기간 중	종신 연금형	금액 보증지급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지급금 없음)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 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25년)동안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또한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IV)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액을 차감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2. 연금액은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3.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10년 보증지급형, 20년 보증지급형 또는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20년 또는 100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 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각각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각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선지급 신청 당시의 신공시이율(연금IV)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20년/100세 보증부 체증형으로,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공시이율(연금IV)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1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변경된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년도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의 신공시이 율(연금IV)로 계산한 금액을 드리고 2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경과 1년 동안의 신공시이율(연금IV)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10.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이 특약의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11.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공시이 율(연금IV)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 12.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1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판매일자: 2025.06.25.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보험금 부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료 산출기초

① 보장부분 적용이율

O: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판매일자: 2025.06.25.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이며, 동 이율은 계약자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또한, 각 특약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2.75%입니다.

② 적립부분 적용이율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됩니다.

③ 적용위험률

O: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	분	20세	40세	60세
80%이상 재해장해	남 자	0.000016	0.000014	0.000074
발생률	여 자	0.000005	0.000003	0.000021

④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KDB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 신계약 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 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나이 40세, 남자, 10년납, 월납, 65세 연금개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 그애느게	투	·자수익률 (순수익률	투자수익률 2.75% 기준 (순수익률 -1.0%)			
		금액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 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	821,934	28,015	3.1%	817,765	90.9%	33,105	3.7%
6개월	1,800,000	1,643,868	864,522	48.0%	1,625,022	90.3%	882,301	49.0%
9개월	2,700,000	2,465,802	1,690,400	62.6%	2,421,650	89.7%	1,728,421	64.0%
1년	3,600,000	3,287,736	2,505,532	69.6%	3,207,532	89.1%	2,571,299	71.4%
2년	7,200,000	6,575,472	5,656,231	78.6%	6,241,231	86.7%	5,906,997	82.0%
3년	10,800,000	9,863,208	8,625,561	79.9%	9,093,561	84.2%	9,177,129	85.0%
4년	14,400,000	13,150,944	11,406,062	79.2%	11,757,062	81.6%	12,370,431	85.9%
5년	18,000,000	16,438,680	13,990,349	77.7%	14,224,349	79.0%	15,475,328	86.0%
6년	21,600,000	19,726,416	16,371,111	75.8%	16,488,111	76.3%	18,479,925	85.6%
7년	25,200,000	23,014,152	18,541,110	73.6%	18,541,110	73.6%	21,372,003	84.8%
8년	28,800,000	26,301,888	20,376,180	70.8%	20,376,180	70.8%	24,022,005	83.4%
9년	32,400,000	29,589,624	21,986,226	67.9%	21,986,226	67.9%	26,534,029	81.9%
10년	36,000,000	32,877,360	23,364,227	64.9%	23,364,227	64.9%	28,894,817	80.3%
15년	36,000,000	32,635,440	12,072,407	33.5%	12,072,407	33.5%	21,971,449	61.0%
20년	36,000,000	32,393,520	0	0.0%	0	0.0%	11,542,988	32.1%
25년	36,000,000	32,149,800	0	0.0%	0	0.0%	4,690,169	13.0%

〈기준: 주계약 기본보험료 30만원, 가입나이 40세, 여자, 10년납, 월납, 65세 연금개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	투	자수익률 (순수익률		투자수익률 기준 (순수익률 -		
		금액누계	해약환급금	환 급률	계약자적립액	적립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900,000	821,964	28,045	3.1%	817,795	90.9%	33,135	3.7%
6개월	1,800,000	1,643,928	864,581	48.0%	1,625,081	90.3%	882,361	49.0%
9개월	2,700,000	2,465,892	1,690,490	62.6%	2,421,740	89.7%	1,728,512	64.0%
1년	3,600,000	3,287,856	2,505,652	69.6%	3,207,652	89.1%	2,571,421	71.4%
2년	7,200,000	6,575,712	5,656,468	78.6%	6,241,468	86.7%	5,907,244	82.0%
3년	10,800,000	9,863,568	8,625,915	79.9%	9,093,915	84.2%	9,177,505	85.0%
4년	14,400,000	13,151,424	11,406,532	79.2%	11,757,532	81.6%	12,370,939	85.9%
5년	18,000,000	16,439,280	13,990,934	77.7%	14,224,934	79.0%	15,475,971	86.0%
6년	21,600,000	19,727,136	16,371,809	75.8%	16,488,809	76.3%	18,480,708	85.6%
7년	25,200,000	23,014,992	18,541,921	73.6%	18,541,921	73.6%	21,372,929	84.8%
8년	28,800,000	26,302,848	20,377,102	70.8%	20,377,102	70.8%	24,023,078	83.4%
9년	32,400,000	29,590,704	21,987,259	67.9%	21,987,259	67.9%	26,535,253	81.9%
10년	36,000,000	32,878,560	23,365,368	64.9%	23,365,368	64.9%	28,896,197	80.3%
15년	36,000,000	32,638,200	12,075,014	33.5%	12,075,014	33.5%	21,974,702	61.0%
20년	36,000,000	32,397,840	0	0.0%	0	0.0%	11,548,386	32.1%
25년	36,000,000	32,156,820	0	0.0%	0	0.0%	4,699,246	13.1%

- (주) 1.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보증비용 등이 차 감됩니다.
 - 2.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3.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 신계약비(해약공제액)를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급 행복자금 개시 후 중도해지한 경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과 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5.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6.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7. 상기 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1.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75% 및 동이율의 1.5배인 4.1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8.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9.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 " 공시실-> 상품비교공시->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비교·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 상기 예시금액은 투자수익률 등 여러 가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해약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배당 더!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상품요약서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 추가납입, 중도인출, 선납을 한 경우
-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한 경우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된 경우
- 1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 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2. 상기 순수익률은 예시된 투자수익률에서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되었습니다.
- 13.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20년까지 연단리 7%기준, 20년 이후 6%기준,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 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32%)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4.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또는 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감소합니다.

◈ 모집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15년납, 월납)

판매일자: 2025.06.25.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후	합계
모집수수료율	2.41%	0.46%	0.45%	0.00%	3.32%

- (주) 1.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2.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임.
 - 3.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음.

◈ 공제금액 공시에 관한 사항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40세, 65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만원, 10년납, 월납)

경과기간	1~10년	11년~25년
보험관계비용	26,022원~26,022원	4,032원~4,062원
(매월)	(8.7%~8.7%)	(1.3%~1.4%)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관계	계약체결비용	매월	-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5.17% (15,510원)

	1		
비용	계약관리비용	매월	-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 3.50% (10,500원) - 납입기간 이후 : 기본보험료의 1.33% (4,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4%~0.021% (12원~62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매일	- 채권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09589%(연 0.4%) - 가치주혼합성장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36986%(연 0.5%) - 시솔루션자산배분안정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시솔루션자산배분적극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91781%(연 0.7%) - 선진국주식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K-REITs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미국고배당포커스주식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 미국나스닥포커스주식형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164384%(연 0.6%)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 발생시	- 채권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01% - 가치주혼합성장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12% -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11% -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04% - Al솔루션자산배분안정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40% - Al솔루션자산배분적극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20% - 선진국주식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16% - K-REITs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연 0.09%
특별계정 운용비용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 채권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110%(연 0.04%) - 가치주혼합성장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연 0.01%) - 액티브배당성장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27%(연 0.01%) -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5%(연 0.02%) - Al솔루션자산배분안정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301%(연 0.11%) - Al솔루션자산배분적극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329%(연 0.12%) - 선진국주식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438%(연 0.16%) - K-REITs혼합형: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00055%(연 0.02%)
보증비용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매월 (연금 개시전) 매월 (연금	- 20년 중: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03333333%(연 0.40%) - 20년 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02083333%(연 0.25%) - 연금기준금액의 0.02083333%(연 0.25%)

		개시후)	
		매월	- 20년 중: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275%(연 3.30%)
		(연금	
	실적배당	개시전)	- 20년 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14166667%(연 1.70%)
	종신연금 보증	매월	
		(연금	- 연금기준금액의 0.14166667%(연 1.70%)
		개시후)	
연금수령	연금수령기간중	매월	
기간중		(연금	- 구좌당 매월 min(영업보험료의 3.5%, 4,000원)
비용	의 관리비용	개시후)	
해약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주) 1. 위험보험료: 연금개시전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
 - 2.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24.1.1 ~ 2024.12.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 3. 기초펀드보수·비용: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2024.1.1 ~ 2024.12.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말하며, 상기 포함된 비율을 최고한도로 하여 실제 비용이 부과됨.
 - 5. 상기 특별계정 운용보수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보수·비용은 해당 특별계정(펀드) 계약 자적립액에서 차감되며 특별계정(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 해약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만원)	71	59	47	36	24	12	0	0
해약공제비율(%)	19.5%	8.2%	4.4%	2.5%	1.3%	0.6%	0.0%	0.0%

(주) 해약공제비율 = 해약공제금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용
크기니티크 -	게아오기 카기비오	1 101 11	추가보험료의 1.5%
추가보험료 -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다만, 누적 중도인출금액 이내에는 Min(추가보험료의 0.5%, 10.000원))
			계약자적립액의 0.1%이내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5,000원 한도, 연4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주) 현재 당사는 펀드변경시에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인 펀드변경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